■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6. 1. 8.>

총포 개조·수리업 허가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신청 내용	상 호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	
	수리업소명	수리업 소재지 (전화번호 :)	
	수리종류	월간수리예정량	저장방법
	종업원수	영업개시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총포 개조·수리업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신체검사서(「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검진기관에서 허가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으로 한정합니다)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위해예방계획서 1부 4. 안전교육계획서 1부 5. 정관과 대표자·임원의 명단(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각 1부	수수료 10,000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유의사항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수리방법

나. 수리총포의 보관 또는 저장방법

다. 자본금

라. 전문기술공의 고용사항

마. 그 밖의 참고사항

처리절차

